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52호
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임신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,
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
서울시에 등록된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
있습니다.

☐ 이에, 임신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'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하여, 초저출생 시대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